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36(수송동) 대림산업(주) 빌딩 지하1층 강당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주한미국대사관 뒤)
※ 문의) 대표전화 : 02)2011-711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aelim.co.kr>

3. 회의 목적사항

《보고 사항》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영업보고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7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안) : 보통주 1,700원(34%), 우선주 1,750원(35%)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첨부 참조)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첨부 참조)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 립 산 업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상 우 (직인생략)

<첨부>

정관 변경(안)

현행	개정(안)	비고
<p>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p>	<p>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p>
<p>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p>
<p>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제12조 <삭제></p>	<p>주식이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p>
<p>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p>	<p>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p>	<p>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p>
<p><신설></p>	<p>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관련 근거를 신설</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p>

제17조(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제30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총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30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총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신 설>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
제4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제4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변경 내용을 반영
제49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9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변경 내용을 반영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조문 정리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증권법 시행일이 2019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정관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단서 신설

대림산업(주)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

의안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제3호	김일윤 (사외이사)	1970.02.28	- '09~ PIA 대표이사 - '01~'08 Lehman Brothers Senior Vice President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